

전주강림교회 장학재단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장학재단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전주강림교회 장학재단(이하 “본 재단”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 (위치) 본 재단의 사무소는 전주강림교회 내에 둔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 (목적) 본 재단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중 성적 우수자와 교육비 마련에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사업) 본 재단은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
2. 대학생 장학금 지급
3. 신학대학(원)생 장학금 지급
4. 외국유학 대학원생 장학금 지급
5. 해외어학연수생 장학금 지급
6. 특기생 장학금 지급
7. 중고등부 학생의 진학지도 및 상담
8. 기타 본 재단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단, 해외어학연수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인 장학금지급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회원

제5조 (구성) 본 재단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성된다. 정회원은 당회 또는 본 재단의 운영위원장이 추천한 자로서 월 2만 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하며, 후원회원은 본 재단의 목적에 찬동하여 후원금을 납부하는 자로서 후원금의 납부 정도에 따라 보통회원, 모범회원, 특별회원, 특지회원,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 회 원 - 월 2만 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자

2. 후원회원

- 보통회원 - 연 12만 원 미만의 후원금을 납부한 자
- 모범회원 - 연 12만 원 이상 24만 원 미만의 후원금을 납부한 자
- 특별회원 - 연 24만 원 이상 60만 원 미만의 후원금을 납부한 자
- 특지회원 - 연 60만 원 이상 120만 원 미만의 후원금을 납부한 자
- 평생회원 - 연 120만 원 이상의 후원금을 납부한 자

제6조 (입회) 당회 또는 운영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한 날부터 입회한 것으로 간주하며, 후원회원은 제5조 제2호에 해당되는 후원금을 납부한 날부터 입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 (의무) 본 재단의 회원은 회비 또는 후원금을 납부해야 하며, 정관의 제반 규정 및 모든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 제7조의 의무를 필한 회원에 한해서만 발의권, 결의권, 장학금수혜우선권, 선거권이 주어진다.

제4장 임원 및 선출

제9조 (임원) 본 재단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
2. 운영위원장 1인
3. 사무장 1인
4. 재무장 1인
5. 이사 15~30인

제10조 (임원의 임무) 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당회장이 되며, 본회 업무를 대표하여 모든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운영위원장은 이사장이 유고시 또는 위촉 시, 본 재단 업무를 대행하며, 제19조 사항을 총괄 집행한다.
3. 사무장은 본 재단 제반 실무를 담당한다.
4. 재무장은 본 재단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다.
5. 이사는 제19조 사항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이사장과 운영위원장은 당회에서 임명한다.
2. 이사 중 년 60만 원 이상을 후원한 자는 다음 년도에 1년간 자동으로 이사가 된다.
3. 기타 임원은 당회와 운영위원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 받아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임원보선) 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선한다.

1. 임원이 결원되었을 경우에는 장학회에서 충원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감사) 본 재단의 재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출하여 운영한다.

1. 감사는 2명을 둔다.
2.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장 총 회

제15조 (총회) 총회는 본 재단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운영위원장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2. 총회의 소집은 1주 전에 공고해야 한다.
3. 총회에서는 회의소집에 상정된 안건 이외의 안건을 처리할 수 없다.

제16조 (결의) 모든 총회결의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7조 (임무)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 재단 제 규정의 제정
2. 장학금 지급에 관한 모든 사항
3. 당회 또는 제직회에 제출할 의안 및 보고사항
4. 기타 장학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사항

제6장 장학회

제18조 (장학회의 위원 구성) 다음과 같이 장학회의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장학회의 위원 구성은 제9조의 임원으로 한다.
2. 장학회의 의장은 이사장으로 하되, 유고시 운영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19 (장학회의 결의) 장학회의 소집과 결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장학회의 소집은 이사장, 운영위원장 또는 장학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관한 결의는 장학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0조 (장학회의 임무) 장학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장학금 지급에 관한 모든 사항.
2. 기타 장학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사항.

제7장 재정

제21조 (재정) 본 재단의 재정은 교회의 지원금, 회비, 후원금 등으로 한다.

제22조 (회계연도) 본 재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 (기타사항) 본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교회의 규정과 일반 관례에 따르며, 필요한 사항은 장학재단 이사장의 지시에 따른다.

1. 본 재단은 본 교회 당회 감독 하에 둔다.
2. 장학금지급세칙은 장학회에서 작성하여 시행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2006년 1월 2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정관은 2006년 12월 1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별지 서식 1호

200 년도 장학금 지원신청서

인적사항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E - mail	
	주소		연락처		
학적사항	학교		학과		
	학년		학번		
	학점		토익(토플)점수		
교적사항	출석교회		소속부서		
보호자 인적사항	성명		직업		
	출석교회		교회직분		

전주강림교회 (최우수, 우수, 장려, 일반, 외국유학) 장학생으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주강림교회 당회장 귀하

별지 서식 2호

200 년도 장학금 지원신청서

인적사항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E - mail	
	주소			연락처	
학적사항	학교			학과	
	학년			학번	
	성적			생활정도	
교적사항	출석교회			소속부서	
보호자 인적사항	성명			직업	
	출석교회			교회직분	

전주강림교회 (고등학생, 신학생, 기타) 장학생으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주강림교회 당회장 귀하

별지 서식 3호

장 학생 추천서

인적사항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E - mail	
	주소		연락처		
학적사항	학교		학과		
	학년		학번		
	학점		토익(토플)점수		
교적사항	출석교회		소속부서		
추천사유					

전주강림교회 (최우수, 우수, 장려, 일반, 외국유학) 장학생으로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추천인 : (인)

전주강림교회 당회장 귀하

별지 서식 4호

장 학생 추천서

인적사항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E - mail	
	주소		연락처		
학적사항	학교		학과		
	학년		학번		
	성적		생활정도		
교적사항	출석교회		소속부서		
추천사유					

전주강림교회 (고등학생, 신학생, 기타) 장학생으로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추천인 : (인)

전주강림교회 당회장 귀하